#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65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김윤덕·이해식·박희승

윤준병 • 신영대 • 이연희

한병도 • 위성곤 • 박상혁

임오경 · 조인철 · 위성락

송옥주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라 가수·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.

그러나 K-POP, 트로트 음악,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,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·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. 일반인 출연자 뿐만아니라 영화·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, 표준계약서를 제·개정하는 경우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"를 "대중문화예술산업,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 런 계약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표준계약서의 제정·보급)	제8조(표준계약서의 제정·보급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		
	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		
	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제18조		
	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		
	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		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제18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	제18조(실태조사) ①		
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			
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			
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			
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	-대중문화예술산업, 대중문화예		
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	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		
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	<u>술용역 관련 계약</u>		
여야 한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